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. 9. 21 선고 2015가단10839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6. 9. 7.

판결 선고 2016. 9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C 대 1626m² 중 별지 도면 표시 28, 29, 30, 31, 2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근 부분 창고 및 장독대 8m², 같은 도면 표시 32, 33, 34, 35,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□ 부분 수돗가 4m², 같은 도면 표시 36, 37, 38, 39, 40, 41, 42, 43, 44,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▤ 부분 주택 33m², 같은 도면 표시 45, 46, 47, 48, 49, 50, 4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ㅅ 부분 행랑채 29m², 같은 도면 표시 23, 24, 25, 51, 52, 53, 54, 55, 56, 57, 58, 59, 60, 61,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○ 부분 서재 및 주방 29m², 같은 도면 표시 62, 63, 64, 65, 6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화장실 1m²를 각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11, 14,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406m²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이미주

별지